

업무상 재해의 판례

-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및 직업성 암 -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박정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4826호) 4조 1항에 의하면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한다'로 규정되어 있다. 질병을 포함한 재해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더욱이 국가의 사회적·경제적 여건에 따라 시대적으로 업무관련성의 범위나 인정기준 등 개념이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산업보건관련 분야 종사자들은 관심을 갖고 항상 그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란에서는 관련된 분들의 이해를 돋기 위하여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및 직업성 암 등과 관련된 업무상 재해 인정에 관한 최근의 법원 판례를 소개한다.

직업성 암 ⑧

악성위종양

- 서울고법 1993. 4. 8. 선고, 92구33116 판결
- 원심판결
- 참조조문 공무원연금법 제35조 제1항
- 참조판례

판결요지

과로, 정신적 압박 등으로 지병인 위궤양이 재발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악성위종양의 발생과 악화의 직접적인 원인이라 볼 여지가 없다.

❖ 판결이유

1. 원고가 경남 창원시교육청 산하 용남초등학교의 서무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1991. 9. 3.에 마산 고려병원에서 악성위종양(위암)의 진단을 받고 위 절제수술 후 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 이에 원

고는 피고에 대하여 자신의 위와 같은 질병이 공무상의 과로 등에 기인한 것이어서 공무원연금법 제35조 제1항 소정의 공무상의 질병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무상요양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공무원 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1992. 5. 4.

위 질병을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는, 원고가 1986. 9.경 위궤양으로 1개월 여간 통원치료를 받은 뒤 식이요법과 등산 등으로 섭생에 주의한 결과 위궤양이 거의 완치되어 갈 무렵 1987. 1. 22.에 돌연 아무런 연고가 없는 울산시교육청 관내로 전근이 되었으나 전 가족이 이주할 형편이 되지 못하여 위 울산시교육청과 그 관내 한일중학교에서 근무하면서 원고 혼자 가족과 떨어져 울산시에 셋방을 얻어 매식을 하고 토요일 오후에는 마산으로 와 가족들을 만나고 월요일 첫새벽에 울산으로 다시 출근하는 등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객지생활과 근무여건의 변화에서 오는 과로와 정신적 압박감 및 침식의 불안정 등 여러 요인이 복합하여 위궤양을 앓은 약한 위가 이를 견디지 못해 위궤양이 재발하였고 위궤양이 진전되어 위와 같이 악성위종양에까지 이르게 되었으니 원고의 위 악성위종양은 공무상의 질병에 해당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요양불승인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데, 공무원연금법 제35조 제1항은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진단, 치료, 간호 등의 요양을 하는 때에는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은 공무원이 요양기관에서 공무상요양비를 지급받는 요양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제35조 제1항 소정의 공무상요양 지급의 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이라 함은 공무원이 공무집행중 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으로서 공

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공무와 직접 연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직무상의 과로 등이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과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자연악화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과로로 인한 질병에는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으로 급격히 악화된 경우까지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원고의 악성위종양이 공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보건데, 악성위종양(위암)은 위점막의 세포가 암세포로 돌변하여 점차 퍼져 나가는 질병으로서 일반적으로 암이 발생되기 쉬워 이른바 전암상태의 질병으로 만성위염, 만성위궤양 등의 병명이 거론되고 있기는 하나 현대 의학상 아직 암의 발생원인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아니하고 있고 다만 체질적 요인이나 식생활을 중심으로 한 환경적 요인 등이 암세포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을 따름이며 일단 암이 발생하면 치유됨이 없이 자연악화 된다는 것이 보편화된 의학적 견해임은 공지의 사실이고, 갑제1호증의 2(결정), 갑제2, 3호증(각 진단서), 을제2호증(상병경위조사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연고지인 창원시교육청 관내에서 근무를 하던 때인 1986. 9.경 위궤양으로 1개월 여간 통원치료를 받은 경력이 있고 위궤양이 거의 완치단계에 이르렀던 1987. 2.경 비연고지인 울산시교육청 관내로 전근이 되어 울산시교육청과 관내 한일중학교 등지에서 근무를 해 오다가 1990. 4.경 다시 창원시교육청 관내로 전근이 되어 용남초등학교 서무과에 서무책임자로 근무를

반증이 없으나, 원고가 위와 같이 비연고지인 울산시교육청 관내에서 근무를 할 당시 그 주장과 같이 업무내용이나 그 업무수행량이 원고의 건강상태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중하고 근무여건이 열악하여 그로 인한 과로와 정신적 압박감 등으로 원고의 지병인 위궤양이 재발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그 증거도 없을 뿐더러, 설령 그 업무수행량의 과중 등으로 인한 과로, 정신적 압박감 등으로 지병인 원고의 위궤양이 재발한 것이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의학적 견해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이 사건 악성 위종양이 지병인 위궤양에서 비롯된 것이라거나 그와 같은 과로 등이 이 사건 악성위종양의 발생과 악화의 직접적 원인이

라고 볼 여지도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악성위종양은 원고의 공무수행과는 무관하게 발병, 악화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어 공무원연금법 제35조 제1항 소정의 공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원고의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요양 불승인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위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